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 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u>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 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0917 | | | | |
|------------|-------------|--------|--|--|--|
| 최초 등록일 | 2021.03.30. | 최종 등록일 | | | |

「고메 국어」

정보공개서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대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드밴스드 고메 엔터프라이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어드밴스드 고메 엔터프라이즈 >

| 대 | 丑 | 번 | 호 | 0 2 | - 6 | 0 8 | 2 - | 1 1 | 5 7 | 팩 | 스 | 번 | 호 | 02-6007-1157 |
|---|-----|-----|---|-----|-----|-----|-----|-----|-----|----|-----|------|-----|---------------------|
| 가 | 맹 사 | 업 부 | И | 가 | 맹 | 사 | 업 | 본 | 부 | 전 | 화 | 번 | 호 | 02-6082-1157 |
| 주 | | | 소 | 서을 | 울특병 | 별 시 | 영 등 | 포 = | 구 은 | 행로 | 58, | 1305 | 호 (| 여의도동, 삼도오피스텔) |
| 홈 | 페 | 0 | 지 | 준 | | Ł | 41 | | 중 | 01 | 0 | Н | 일 | Age201111@naver.com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가맹사업의 내용
-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7.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연연도 말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 시작일
- 2. 가맹사업의 연혁
- 3. 가맹사업의 업종
- 4. 최근 3개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 6. 기타 가맹사업현황
-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 10.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 11. 가맹금 예치기관
-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가맹점사업자의영업지역 보호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 2. 분쟁 해결 절차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가맹점 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등
- 4. 신용제공 등 내역
- 5.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어드밴스드 고메 엔터프라이즈의 "「고메 국어」")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고메 국어」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 호 | 영업표지 | | | | |
|-------------|-------------|------------|--------|----------------|--------------|
| | 「고메 국어」외 3개 | 서울특별시 영등 | 포구 은행로 | 58, 1305 호(여의도 | 동, 삼도오피스텔) |
| 어드밴스드 고메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엔터프라이즈 | 해당 없음 | 2020.11.11 | 박승룡 | 02-6082-1157 | 02-6007-1157 |
| | 법인등록번호 | 해당 없 | 음 | 사업자등록번호 | 168-16-01306 |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 계 | 이름 / 상호 | 주 소 | | | | |
|---------------|---------|-----|--------|--------|--|--|
| ᇀᄉᇃᄓᄱᅁ | | | - | | | |
| 특수관계인 (임원) | _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22) | | _ | _ | _ | | |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사용인은 제외) 및 제 11 조 제 1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3.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업명/영업표지 | 양도일 | 주 소 | 대표자 |
|-------------------------|-------------------------|------------|---------------------------|-----|
| 당사가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을 양도함 | 주식회사 엔에스푸드 / 「고메 과학」 | 2022.08.01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69-14 | 강용구 |

[☞]당사는 2022년 8월경「고메 과학」을 주식회사 엔에스푸드에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0910 멸치집」으로 영업표지가 변경되었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가 향후 영위할 「고메 국어」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랜드 명 | 상호 | 상표(서비스표), BI 등 | | | |
|-------|---------------|------------------------------------|---------------------------|--|--|
| 고메 국어 | 고메 국어 00 점 | Gournet 5.T.U.D.Y 學樣性 資平學 | Gournet L.R.G.U.R.G.E. | | |

5. 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을 참조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 연도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 년 | _ | _ | _ | 0 | _ | _ |
| 2022 년 | - | - | - | 0 | - | - |
| 2023 년 | _ | - | - | 0 | - | - |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 аопт | 연도 |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 |
|------|-----|-------------|----|--|
| 8합표시 | 5 T | 매출액 | 비고 | |





| | 2021 년 | 0 | - |
|-------|--------|---|----------------|
| 고메 국어 | 2022 년 | 0 | - |
| | 2023 년 | 0 | _ |
| | 2021 년 | 0 | - |
| 고메 수학 | 2022 년 | 0 | - |
| | 2023 년 | 0 | - |
| | 2021 년 | 0 | - |
| 고메 영어 | 2022 년 | 0 | - |
| | 2023 년 | 0 | - |
| | 2021 년 | 0 | - |
| 고메 논술 | 2022 년 | 0 | - |
| | 2023 년 | 0 | - |
| | 2021 년 | 0 | 2022 년 가맹사업 양도 |
| 고메 과학 | 2022 년 | 0 | 2022 년 기정사립 당도 |
| | 2023 년 | _ |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성명 | 직위 | | 개인별 사업경력 | |
|---------------|-------------|-----|--------------|--------------------|-------|
| 전면어구 | <i>2</i> 00 | 47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박승룡 | 대표자 | 2020.11 ~ 현재 | 「고메 국어」 가맹사업 준비 | 경영전반 |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직원수(명) | |
|---------------|-----|--------|----------------|
| 시점 | 상근 | 비상근 | 역전구(8 <i>)</i> |
| 2023년 12월 31일 | 1 | -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름/상호 |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 기간 | 사업내용 | |
|----|--------------------------|-----------------|-----------------|------------|--------|
| | | 고메 국어(20210917) | 2021.03~현재 | 국어 공부방 | |
| | 박승룡 <i> </i> | 고메 수학(20210944) | 2021.03~현재 | 수학 공부방 | |
| 당사 | 상사 어드밴스드 고메 엔터프라이즈 | | 고메 영어(20210945) | 2021.03~현재 | 영어 공부방 |
| | | 고메 과학(20210943) | 2021.03~2022.08 | 과학 공부방 | |
| | | 고메 논술(20210916) | 2021.03~현재 | 논술 공부방 | |

[☞]상기 기간은 해당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의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고메 국어」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은 현재 출원 준비중입니다.

[☞]상기 고메 과학은 2022년 8월경 주식회사 엔에스푸드에 양도하여 현재 당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는 현재 「고메 국어」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2. 「고메 국어」의 연혁

「고메 국어」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어드밴스드 고메 | 「고메 국어」 | 박승룡 | 2024 년(예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 길 44, 5 층 506 호 (서초동, 서초나산스위트) |
| 엔터프라이즈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305 호(여의도동, 삼도오피스텔) |

3. 「고메 국어」의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
|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
| 「고메 국어」 | 기타교육 | 공부방 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 | | | |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고메 국어」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고메 국어」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 지역 | 202 | 1년 12월 | 31일 | 202 | 2년 12월 | 31일 | 202 | 3년 12월 (| 31일 |
|-----|-----|--------|-----|-----|--------|-----|-----|----------|-----|
| N =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 전체 | - | - | - | - | _ | - | - | - | - |
| 서울 | _ | _ | _ | _ | _ | _ | _ | _ | - |
| 부산 | - | - | - | - | _ | - | - | - | - |
| 대구 | - | _ | _ | - | _ | _ | _ | - | - |
| 인천 | - | - | _ | - | - | - | - | - | - |
| 광주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대전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울산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세종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경기 | - | _ | _ | _ | _ | _ | _ | _ | _ |
|----|---|---|---|---|---|---|---|---|---|
| 강원 | _ | _ | _ | _ | - | _ | _ | _ | _ |
| 충북 | - | - | _ | _ | - | _ | _ | - | _ |
| 충남 | - | _ | _ | _ | - | _ | _ | _ | _ |
| 전북 | - | - | _ | _ | - | _ | _ | - | _ |
| 전남 | - | - | _ | _ | - | _ | _ | _ | _ |
| 경북 | - | - | _ | _ | - | _ | _ | - | _ |
| 경남 | _ | _ | _ | _ | _ | _ | - | _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고메 국어」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고메 국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 신규 개점·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21 년 | _ | _ | _ | _ | - | - |
| 2022 년 | _ | _ | _ | _ | - | - |
| 2023 년 | - | - | - | - | - | - |

6. 기타 가맹사업현황

「고메 국어」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정보공개서 | | 가민 | 성점 및 직영경 | 덕 수 |
|------|---------------|-----------|----------|-----------|-----------------|-----------------|-----------------|
| 구 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등록번호 | | 업종 | 2021. 12.31. | 2022. 12.31. | 2023. 12.31. |
| | | 고메 수학 | 20210944 | 교육 서비스 | -/- | -/- | -/- |
| CHIL | 박승룡/ 어드밴스드 | 고메 영어 | 20210945 | 교육 서비스 | -/- | -/- | -/- |
| 당사 | 고메 엔터프라이즈 | 고에 과학 | 20210943 | 교육 서비스 | -/- | 202 가맹사(| |
| | | 고메 논술 | 20210916 | 교육 서비스 | -/- | -/- | -/- |

☞상기 고메 과학은 2022년 8월경 주식회사 엔에스푸드에 양도하여 현재 당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당사의 「고메 국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사업연도에 연간 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2 | 2023년 연간 매출액(단위:원, VAT미포함) | | | | | |
|----|-------------|-------|----------------------------|----------|-------------|----------|-------------|-------|
| 지역 | 10명 2023년 말 | 연간 평균 | 매출액 | 연간 평균 상한 | | 연간 평균 하한 | | 산출 |
| N- | 가맹점수 | 매출액 | 면적 3.3㎡당 | 상한 | 면적 3.3㎡당 | 하한 | 면적 3.3㎡당 | 가맹점 수 |
| 전체 | - | - | - | _ | - | - | - | _ |
| 서울 | - | - | - | _ | - | - | - | _ |
| 부산 | - | - | - | _ | - | - | - | - |
| 대구 | _ | _ | - | _ | - | - | _ | _ |
| 인천 | _ | _ | _ | _ | _ | - | _ | _ |
| 광주 | _ | _ | _ | _ | _ | - | _ | _ |
| 대전 | - | _ | _ | _ | _ | _ | _ | _ |
| 울산 | - | _ | _ | _ | _ | - | _ | _ |
| 세종 | _ | _ | _ | _ | _ | _ | _ | _ |
| 경기 | _ | _ | _ | _ | _ | _ | _ | _ |
| 강원 | _ | _ | _ | _ | _ | - | _ | _ |
| 충북 | _ | _ | _ | _ | _ | - | _ | _ |
| 충남 | - | _ | _ | _ | _ | _ | _ | _ |
| 전북 | _ | _ | _ | _ | _ | _ | _ | _ |
| 전남 | - | - | - | _ | - | - | - | - |
| 경북 | - | - | - | - | - | _ | - | - |
| 경남 | _ | _ | _ | _ | _ | _ | _ | _ |
| 제주 | - | - | _ | _ | _ | - | _ | -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고메 국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가맹점이 없어 해! | 당사항 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고메 국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기 간 | 금액(단위:원) | 비고 |
|-------|-------|-----------------|----------|----|
| 광고선전비 | (비공개) | 2023.01~2023.12 | _ | |
| 판매촉진비 | (비공개) | 2023.01~2023.12 | - | |
| | 합 계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명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국민은행 | 역삼동종합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1 동 831 | 02-553-0857 |

[☞]상기 예치기관의 예치서류 및 절차는 예치기관의 정책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예치 전 반드시 당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라.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 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고메 국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가맹점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가맹점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 안함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

가.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금액(단위:원) (VAT 포함)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가맹비 |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 및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 550,000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개점 전 교육비 | 330,000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 요되는 소멸성 비용 |

나.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금액(단위:원) (VAT 포함)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양수 | 양수 가맹점 오픈 및 | 무료 |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
| 관리비 |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 (잔존기간 양수 시) |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 |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 |
|-----|----------|---------|-------------------|---------|
| 교육비 | 개점 전 교육비 | 330,000 |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 요되는 소멸성 |
| | | | 상계처리 후 반환 | 비용 |

☞ 귀하가 기존 가맹점의 계약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양수하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의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는 양도인으로부터 귀하가 인수하며, 잔존기간이 아닌 새롭게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가맹계약을 원하는 경우 양수가맹비로 신규 가맹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2)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역 | 금액(단위:원)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 1,000,000 |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 |

3)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원/VAT 포함) | | | |
|----------------|-----------------|---------------|--|--|
| 하게 | 신규 가입자 | 기존 가맹점 양수자 | | |
| 합계 | 1,880,000 | 1,330,000 | | |
| 가맹비 | 550,000 | 무료(잔존기간 양수 시) | | |
| 교육비 | 330,000 | 330,000 | | |
| 보증금(VAT 해당 없음) | 1,000,000 | 1,000,000 | | |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약 요청 일자 | 위약금 |
|----------|-----|
| | |





|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금 수준의 10% |
|---------------------------------|----------------------|
|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금 수준의 30% |
|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금 수준의 50% |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고메 국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평수 무관/단위:원/VAT 포함)

| 품목 | 지급대상 | 비용 |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
| 87 | 시由네경 | 금액 | 3.3m2 당 금액 | 시납기원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간판 및 사인물 | | 330,000 | _ | 계약 시 개별 협의 | 설치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초도물품 | V-1의 거래상대방 | 660,000 | _ | 계약 시 개별 협 의 |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합 계 | | 990,000 | _ | 3.3m2당 | 합계 : 금액합계/기준평 수 |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은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간판 및 사인물과 초도물품 외에 인테리어, 장비/집기 등은 귀하가 자체 조달합니다.
- ③ 화재보험, 고객 손해보헙 등은 귀하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 ④ 초도물품은 귀하 가맹점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고메 국어」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지선정의 주체 | 입지 선정의 기준 | | | | | |
|------------|---|--|--|--|--|--|
| |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점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 | | | | |
| |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 | | | | |
|) 가맹희망자 |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 | | | | |
| 가정의당자 | 가맹점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 | | | | | |
| | 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 | | | | | |
| | 다. | | | |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당사의 개점 전 교육과정 이수 (교육수료증 필수)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
| 기타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 만 20 세 이상일 것 |

- ☞ 상기 기준은 당사와 귀하 간의 계약 등의 조건이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에 따른 기준은 귀하의 책임하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 ☞ 상기 간판 및 사인물과 초도물품 외에 인테리어, 장비/집기 등은 귀하가 자체 조달합니다.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가맹점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각 품목의 공급방법은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8) 금전지급방법

귀하(신규 및 기존 가맹점 양수인)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금액(단 | 지급시기 | |
|--------------------|-----------|------------|--------------|
| 예치 가맹금 | 신규 가입자 | 기존 가맹점 양수자 | |
| (양수관리비) | 1,880,000 | 1,330,000 | 계약 체결 시 |
| 예치 가맹금 외 기타 금 액 | 990,000 | (일시불) | 인테리어 공시 착수 시 |





☞ 금전 지급 방법은 최초 계약 체결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 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역 | 지급 대상자 | 금액(단위: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 지급기한 |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
|-----------|--------------------------------|-----------|---|----------|---|
| 로열티 |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 가맹 본부 | 110,000/월 | 매월 말일 | 후불로 반환 안됨 |
| | 수시 교육 | 가맹 본부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 실비로 반환 안됨 |
| 개점 이후 | 특별 교육 | 가맹 본부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개별 |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
| 교육비 | 재교육 | 가맹 본부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
| 판촉 분담비 | 판촉 | 가맹 본부 |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 |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
| 광고 분담비 |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 가맹 본부 |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20%, 가맹점사업자 측 8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 |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





| | | | 총 개선비용은 협의하여 | |
|-----|----------|----|----------------|--------------|
| | 가맹점의 시설, | | 결정(당사가 지원금액을 | |
| 가맹점 | 장비, 인테리어 | 가맹 | 공제한 나머지 잔여 | 실비로 가맹점 개선 후 |
| | 등의 | 본부 | 개선 비용. | |
| 개선비 | 노후화 개선 | 亡十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 반환 되지 않음 |
| | 비용 | |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 | | | 참고) | |

[☞]귀하는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게 미지급 금액의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3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차액가맹금'이라 함)의 2023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기준 : 2023 년) | 내용(단위 : 천원, %) |
|----------------------------------|----------------|
|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가맹점 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해당사항이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가맹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을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회계자료 등'이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가맹점에 출입하여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당사와 협의를 통하여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점포





이전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금액 (단위:원/VAT 포함)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갱신비 | 갱신 시점의 신규 가맹비의 50% | 계약연장(갱신) 일자까지 | 갱신 이후 빈 | ·환되지 않음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관리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 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고메 국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고메 국어」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다. 상기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상의 위약금,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고메 국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①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강제/권장/자체조달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② 상기 간판 및 사인물과 초도물품 외에 인테리어, 장비/집기 등은 귀하가 자체 조달합니다.
- ③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가맹점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④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순번 | 품목(단위) | 공급가격 (단위:원, VAT 포함) | 강제/권장 | 구분 |
|---------|--------|------------------------|-------|----|
| 해당사항 없음 |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고메 국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름/상호 | 관계 |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비고 |
|-------|----|--------------------------------|---------------|----|
| | | | |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고메 국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상품/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มอ |
|-------|-------|------|---------------|----|----|
| 해당 없음 | | | | | |

2) 당사는 「고메 국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계 | 상품/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 | | 해당 없음 | |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고메 국어」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





당사가 제공한 교재 및 프로그램 의하여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받지 않은

1 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또는 위약벌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3회 위반 : 계약의 해지 및 위약벌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서비스 품목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전략적 개선. 경쟁업체의 출현 또는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환경 및 법률환경의 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및 가맹점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기존 서비스 품목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 본부가 지정한 서비스 품목을 판매해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서비스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고메 국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 제6조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당사의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일업종이란 V-7.의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V-7.에서 경업이 | 가맹본부 | 계열회사 등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 |
| 금지되는 업종 | 「고메 국어」 | 해당 없음 | |

☞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당사가 「고메 국어」과 사업형태가 동일한 업종 외의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다른 브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의 기준점(가맹점의 중앙점)으로부터 직경 400M(반경 200M)를 범위로 | 별지에 영업지역 |
|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후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 | 표시하여 그 범위를 |
| (다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 설정함) | 명확히 함 |

3) 영업지역의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변동 등) 또는 이에 준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하고 합의 후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가맹점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고메 국어」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 |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 매출액 비중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0 | 0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0 | 0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1) 가맹계약기간

「고메 국어」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 입니다. 갱신 시에는 **1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 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 1.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2. |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3. |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4.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 0.4501.011 |
| | 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5.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6. |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 | |
| | | |
| 7. | D-180 ~ D-90 | |
| | (예→B, 아니오→®) | D-180 % D-90 |
| 8. | D-60일 이전 | |
| | D-60일 이진 | |
| A | D-day | |
| E | D-day | |
| C | D-day | |
| | | |
| | | |
| E | | |
| | | |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 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 |
| 아니한 경우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가맹점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 |
| 하지 못한 경우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 7조 2항 각호 |
| 지키지 않은 경우 | , 1 20 11 |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 |
|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 | |
| 다.) | |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 | 5문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3조2항 및3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4조3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4조4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5조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 15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 16조 | |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17조1항 | 25조 |
| 가정점사업자가 미월규시의구를 위한한 경우 | 및2항 | 각호 및 31 |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18조 | 조 1 |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20조1항 | 호 1 |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 | 21조2항~4항 | 호 |
| 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21소2영~4영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21조5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22조9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 | 23조 | |
| 하지 않는 경우 | <u> </u> | |





| 26조 | |
|----------|--|
| 27조2항및3항 | |
| 27조6항 | |
| 28조 | |
| 29조 | |
| 30조2~5항 | |
| 30조7항 | |
| 35조1항 | |
| 25조21호 | |
| 31조1항2호 | 호 |
| | 27조2항및3항 27조6항 28조 29조 30조2~5항 30조7항 35조1항 25조21호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 | | |
|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 |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 | |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 | |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 | | |
|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 | | |
|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 | | |
|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1조 4항 각호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 | | |
|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 다) | | | |
|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 | | |
|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 | |
|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 | | |
|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 |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1 조 3 항 각호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 01 = 00 -3 |
|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 |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31조 2항 각호 |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당사 담당 |
|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 |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 |
|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 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 |
| 가맹계약 조건 | 권 이전 완료 |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 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관리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 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고메 국어」과 동종업종 (타사 가맹점, 독립점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메 국어」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초등과정의 학생에게 국어 교과목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공부방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고메 국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
| 09:00 ~ 21:00 | 월 20일 이상 |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 권장 종업원 수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
|---------------------------|--------------------|
| 원활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 | |
| 위하여 가맹점 내 1명 이상의 근무를 권장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에 필수적으로 |
| (매장의 고객 수와 매출상황에 따라 | 근무하도록 강제됨 |
| 가맹점사업자가 재량적으로 근무인원 결정 가능)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어드밴스드 고메 엔터프라이즈와 귀하가 각 1 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HORE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군담일사 |





| | 브랜드광고 | - 광고비의 20% | 광고비의80% / 가맹점사업자수 |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 →가맹점부 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 받은 |
|------|---------|------------|----------------------|--|
| 공동광고 | 상품광고 등 | | |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
| | 가맹점모집광고 | 100% | _ | _ |
| 공동판촉 | 행사에 따라 | 기획비용부담 | 제작비용부담 |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
| 5525 | 달라짐 | 기획, 제작 비원 | 용 이외는 협의 |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

- ☞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TV, 라디오,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과 인스타그램 등 SNS, 블로그, 파워링크, 키워드 등 온라인을 통한 형태 일체는 모두 공동광고 중 브랜드 광고, 상품 광고에 해당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 사업 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 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약벌등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 18 조(경업금지 의무) 제 1 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subseteq 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
| 귀하가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2항 |
|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 (₩5,000, 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3항 |
|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기간 내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 일 금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4항 |
|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3조 제5항 |
|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및 제 5 항의 손해배상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3조 제6항 |
|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 제37조 제1항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소요기간 | 비고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02-6082-1157).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등 | - | |
| 1 차 상담 |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 |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1.영업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 1 일 | 개시이전 부담 중 금전지급 방법 |
| 임대차 계약 | - 상권분석 - 가맹점 입지 선정 | 1 일 | · 참조 |
| 실측/설계 | - 평수 계산 | 3~5 일 | |
| 간판/사인물, 초도물품 | - 간판/사인물 설치 및 초도물품 비치 | 3,-2,≡ | |
| 교육 및 오픈 | - 점주교육 | 1~2 일 | |

- ☞ 상기일정은 귀하의 개별 사정(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등)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거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호 자발적인 조정을 받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 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가맹점 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메 국어」 가맹점의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가맹점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가맹점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 환경 개선 사유 | 가맹본부의 부담 항목 | 가맹본부의 부담비용 비율 | |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기타 비용은 협의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
| 지급 절차 | 간판교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는 날부터 90일 이내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 |
| 비용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등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당사의 직원 등을 파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의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의 범위

- 1. 계약이행(Contract):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 2. 표준화(Standardization):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유지 및 각 서비스 품목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지도
- 3.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가맹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 방법에 대한 지도
- 4. 판촉(Sales Promotion): 신규 고객 창출 및 판매 촉진활동 지도
- 5.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귀하는 당사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당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하는 상기 경영지도의 범위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게 귀하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로부터 특별 경영지도 요청을 받은 당사는 경영지도 계획서를 귀하에게 제시할 수 있고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않으나 귀하가 원하는 경우 다양한 창업자금 대출 정보 등을 제공할수 있습니다.(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5.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경영상 지원활동 내역은 없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_ | _ | - | - | - | _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고메 국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고메 국어」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수시교육 | 가맹점 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 개별 또는 집단강의 | | 필수교육 |
| 특별교육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 개별교육 | 개별협의 | 선택교육 |
| 재교육 | 가맹점관리 및 운영 | 개별교육 | | 필수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
|---------------------------|
|---------------------------|





| 개점 전 교육 | 1일 (3시간) | 330,000 | 최초 계약 시 이수 |
|------------|-------------|---|---------------|
| 수시 교육 |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71 O 11 11 11 |
| 특별 교육 개별협의 |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필요 시 실시 |
| 재교육 |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총 1 인)이며 타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 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u>다</u>.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고메 국어」관련하여 운영중인 직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 ōŀ | 당사항 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เมอ |
|---------------------|-----|
| 해당사항 없음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มอ |
|----------------------|----|
| 해당사항 없음 | |





별첨 1 재무사항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사장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 사전제공 확인증(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1조 제1항에 의거, <어드밴스드 고메 엔터프라이즈>의 「고메국어」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받았을 확인합니다.

| |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 | | | | |
|----|--------------------------|-----|-----|-----|----|
| 구분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아래 글자 위에 동일하게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제공 받았습니다.

| 정 보 공 개 서 최 종 등 록 일 : | 년 | 월 | 일 | |
|-----------------------|---|---|---|---|
|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시: | 년 | 월 | 일 | Ы |
| 정보공개서 등 제공장소: | | | | |

정보공개서 등 제공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정보공개서 등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주 소: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등 사전제공 확인증(가맹점사업자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1조 제1항에 의거, <어드밴스드 고메 엔터프라이즈>의 「고메국어」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받았을 확인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 | | | | | | | | | |
|--------------------------|----|-----|-----|-----|----|--|--|--|--|
| 구분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아래 글자 위에 동일하게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제공 받았습니다.

|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년 | 월 | 일 | | |
|---------------|---|---|---|---|--|
|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시: | 년 | 월 | 일 | Ы | |
| 정보공개서 등 제공장소: | | | | | |

정보공개서 등 제공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정보공개서 등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주 소: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전화번호: